

●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-790호

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5월 24일

국토교통부장관

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령(안)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각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, 위원의 임기 및 해촉 등의 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이 개정(대통령령 제34121호, 2024. 1. 9. 공포, 1. 12. 시행)됨에 따라 이를 우리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반영하고, 그간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상 미비점도 일부 보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대상에 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에 따른 규제의 존속·재검토기한 심사 및 기존규제 자체정비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(안 제2조)
- 나. 위원의 임기를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, 임기 중 해촉 가능한 사유에 ‘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’를 추가(안 제4조)
- 다.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서면회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, 의결결과의 분류기준

(원안의결, 수정의결, 재심의)을 마련(안 제6조 및 안 제9조)

라. 위원과 직접적 이해관계 등으로 공정한 심사가 어려운 안전에 대하여 당해 안

건 심의·의결에서 제척 또는 회피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(안 제10조)

마. 심의·의결 과정에서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분과위원회
에 보고하도록 규정(안 제12조)

3. 의견 제출

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
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6월 14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(참
조 : 규제개혁법무담당관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 전문은 국토
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, 정책자료→법령정보→입법예고·행정
예고)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서 제출

- 의견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
화번호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붙임 양식 활용)

개 정(안)	수 정(안)	수 정 사 유

나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

- 1) 전자우편(이메일) : ejlee0357@molit.go.kr

2) 주소 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, 6동 555호

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, 규제개혁법무담당관

3) 팩스 : (044) 201 - 5517

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(전화 : (044) 201 - 4817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